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고시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한지역

가. 위치 : 동작구 상도동 176-1번지 외 31필지(구청사 건립 예정부지)

나. 면적 : 13,491 m^2

2. 제한사유

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과 관련 동작구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원활한 행정타운 건립사업 추진

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합리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3. 제한대상 행위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다.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가능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5. 관계도서 : 생략(동작구청 행정타운건립추진단, 도시계획과 비치도서와 같음)

6.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행정타운건립추진단 (☎820-2866), 도시계획과(☎820-9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